

kiri Weekly

2014.6.16 제287호

이슈

부부 이혼시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

포커스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글로벌 이슈

미국 401K 적립금 감소 예상과 영향

일본 1/4분기 경제성장률 개선 평가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부부 이혼시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

이상우 수석연구원, 김동겸 선임연구원

요약

- 대법원은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공개변론재판으로 선정하여 2014년 6월 중에 재판을 개최할 예정이며, 동 재판 결과는 향후 퇴직연금 및 특수직역연금과 관련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동 재판의 쟁점은 부부 일방(재직 중)의 미래에 수령할 퇴직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인데 2심 재판에서는 1990년대의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미래에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는 퇴직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기준을 이혼 당시 퇴직금 금액의 확정성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할 수 없다는 것임.
 - 이에 따라 많은 이혼자들은 현재까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종전 대법원 입장은 이혼시 분할 청구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연금분할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동일재산에 대한 동일한 규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불공정성, 다양한 개선안 모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법원 인식, 퇴직(연)금제도의 근거법과 충돌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함.
 - 미국과 독일의 경우 금액의 확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음.
- 향후 선진국 수준의 여성 권리 개선, 공정한 재산분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분할제로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관련법에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이혼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인 경우에 대한 향후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재산분할 비율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동등한 분할비율을 적용하고, 재직 중 혼인기간에 대한 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수령할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지급 시점은 중도인출 기능이 없는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급여 수급 시, 반대인 퇴직(연)금의 경우 이혼 성립시 또는 급여 수급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인출(이혼 성립시) 사유를 추가하고 압류신청권(급여 수급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혼 성립시 지급할 분할대상은 DB형의 경우 중도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퇴직 전 1개월치 평균임금에 대한 근무기간), DC형의 경우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잔액이 기준이 될 것임.
-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일시금 선택시 청구권자가 분할 받은 일시금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대법원은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관련 사건을 올해 첫 공개변론재판¹⁾으로 선정하여 2014년 6월 19일 재판을 개최²⁾할 예정임.

-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혼시 재직 중에 있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2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한 바 있음.
- 2심 재판은 남편인 B씨가 미래에 수령할 부인 A씨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대법원(1995, 1998)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 이러한 판례에 따라 부부 일방이 재직 중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 사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 공개변론재판이란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03년 10월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가장 최근의 공개변론재판으로 통상임금(2013. 9. 5), 키코소송(2013. 7. 18) 등이 있음.

2) 파이낸셜뉴스(2014. 6. 2), “大法, 이혼시 퇴직금 분할 여부 TV공개변론 연다”.

■ 반면, 대법원은 퇴직 후 이미 지급된 퇴직금(금액이 확정된)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퇴직급여 금액의 확정 여부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퇴직급여를 민법상 혼인기간중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퇴직금 청구권을 금액이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로 여성인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혼 증가³⁾ 등으로 최근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권리 주장이 크게 확산⁴⁾되고 있는 가운데 동 재판 판결은 향후 특수직역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퇴직급여의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하급심⁵⁾에서는 퇴직급여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대법원 입장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재산분할, 특히, 수령 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였던 퇴직급여제도의 재산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민의 법률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재산분할제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재산분할 법적 근거와 분할연금제도 개요



가. 법적 근거

■ 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으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도입함.

- 즉, 혼인 전 또는 혼인기간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 부부 각각의 명의자가 관리, 사용, 수익(민법 제831조)”함으로써 명의자의 재산권을 인정함.⁶⁾

3) 2000년대 중반이후 이혼율이 정체되고 있으나 1970년 이후 지난 33년간 이혼이 약 9배 증가하고 2013년 115,300쌍이 이혼하여 유배우 이혼율이 4.7%(결혼한 부부 1천 명당 이혼건수)를 기록함.

4) 재산 50% 이상 분할 받은 여성 비율이 5.4%(1998)에서 22.5%(2012)로 증가함(송효진 외 1명(2014),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최근 판례분석』, 가족법연구 제28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5)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10986 판결 등.

6) 다만, 소유권자가 불분명하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봄(민법 제830조 제2항 관련).

- 그러나, 재산분할 관련 판례에서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 중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경우 어느 일방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 배우자의 잠재적인 지분권을 인정하고 있음.⁷⁾⁸⁾

■ 또한, 우리나라는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민법 제839조 제1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부 재산분할제를 도입함.

- 다만, 민법은 재산분할시 당사자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⁹⁾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민법 제839조 제2항)” 명시함.¹⁰⁾
 - 따라서 부부 재산분할 범위는 당사자 쌍방이 협력한 재산이며, 재산분할 합의가 결렬될 경우 부부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요구됨.¹¹⁾
 - 다만, 그동안의 판례는 “장래에 확정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이것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¹²⁾”는 견해가 지배적임.

7) 대법원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8) 또한 가정법원의 민원상담 매뉴얼(2014)은 “①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소극)재산, ② 부부 각자 특유재산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그 재산, ③ 소유명의를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 재산, ④ 소유명의를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부의 한쪽 또는 쌍방의 공유 재산”을 재산분할의 인정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9)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음(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10) 다만, 부부가 합의시 원치 않는 경우 특정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2년임(제839조의2).

11) 그러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 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1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차선자(2012), 『이혼 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

나. 우리나라의 연금분할제도 현황

■ 국민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제도의 도입 이후 여성계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분할제도를 제도화하고, 금액의 확정 또는 미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표 1>과 같은 수급 요건을 갖출 경우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다만, 법률에서 최소한의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5년 미만의 이혼 등의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과 청구권이 제한되는 등 연금분할 사각지대¹³⁾가 상존함.

<표 1> 분할연금 수급 요건 및 급여수준

근거법	수급 요건	급여 수준과 시효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p>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음.</p> <p>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②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③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④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p>	<p>-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p> <p>- 연금분할 청구권은 ①~④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함</p>

■ 그러나, 현행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금, 퇴직연금의 관련 법률에는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특수직역연금 및 퇴직(연)금의 경우 이혼시 부부 일방에 재산분할을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주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재산분할에 있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13) 혼인 기간이 5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수급연령인 61세 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상존함(신경림의원 보도자료 참조, 2013. 10. 21). 혼인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0~4년) 이혼건수가 2013년 전체에서 27.3%(통계청, 2014. 4. 22)를 차지하여 청구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3. 퇴직급여제도 재산분할 판례 평가와 시사점



가. 퇴직급여제도 재산분할의 판례

■ 우리나라 대법원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혼 당시 배우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 범위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대법원에서 통설적으로 적용됨.¹⁴⁾
- 반면, 대법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에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시하고 동 판례가 현재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¹⁵⁾
 -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¹⁶⁾

■ 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특수지역연금을 포함)¹⁷⁾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립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음.

- 우선, 퇴직연금의 경우 본인의 노후생활보장적 의미를 지니는 급부이므로 부양적 분할¹⁸⁾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는데 참고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임.
- 반대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이혼시 청산적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임.¹⁹⁾

14)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퇴직하여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0. 5. 2 선고, 2000스 13판결).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 르3326, 3333 판결에서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5) 그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 1713·94므 1720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 213 판결).

16) 대법원은 일방의 배우자가 별거 직후 수령한 퇴직금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판결).

17) 법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제도를 넓은 개념의 퇴직연금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18)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부양의 필요성과 부양의무자 측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일시금 또는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보상을 말하며, 청산적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제 몫을 찾는 것을 말함(김용원 2009).

19) 황우여(1992), 『개정민법상의 이혼』, 인권과 정의.

〈표 2〉 이혼시 퇴직급여 재산분할 판례 요약

근거법	퇴직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포함)
퇴직 후 수급권 발생으로 배우자가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분할 가능	재산분할 가능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으나 향후 수령할 연금이 남아 있는 경우	-	재산분할 불가
퇴직하지 않아 퇴직(연)금의 금액이 불확실 할 경우	재산분할 불가	재산분할 불가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oneclick.law.go.kr/CSP/Main.laf>)의 법원의 이혼관련 판례를 기초로 작성함.

■ 대부분의 법원은 이혼 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 청산적 재산분할을 통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²⁰⁾

-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의 경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²¹⁾”하도록 판시한 바 있음.
- 반면, 퇴직하였으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남아 있는 경우 대법원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²²⁾”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이혼 당시 재직 중이므로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나. 기존 판례 평가

■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혼시 분할 청구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첫째, 퇴직(연)금이 후불임금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통설과 판례²³⁾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단순히 금액이 확정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일성격의 재산을 수령자 선택에 의해 재산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불공정성이 상존함.

20) 부산지방법원, 90드22064, 92느1226.

21) 대법원은 2006. 7. 13. 선고 2005 르1245 판결.

22) “원고가 변론종결일 당시(1996. 8. 23) 이미 수령한 1996. 8월분까지의 연금 합계 5,500여 만 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되, 향후 수령할 연금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서울고등법원 1996. 9. 6. 선고 95르3251, 3268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르1533,1540 판결.

23) 우리나라의 법원은 퇴직급여의 성질에 대해 임금후불설을 통설로 하고 있음(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7529 판결).

- 이에 반해 주택 및 예금 등의 경우 이혼 성립시 가치로 청산하여 재산분할 하는 것이 가능
- 둘째, 연금 수령이 진행 중인 이혼의 경우에 향후 받을 연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국민연금법 제64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함.
- 셋째, 향후 수령할 연금가입자의 여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연금을 청산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다양한 지급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재산분할 청구권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가령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 수령 전 또는 수령 후 사망할 경우 이혼 당시를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한 재산분할 금액을 기준으로 탈퇴 또는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의 마련이 가능함.
- 넷째, 기존 법원의 퇴직급여에 대한 미확정성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로퇴법)과 충돌할 개연성도 상존함.
 - 근로퇴법은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전에 퇴직금부를 확정²⁴⁾하고 있어 급부를 분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함.²⁵⁾
 - 또한, 급부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²⁶⁾에도 적립된 연금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청산하는 것이 가능함.

다. 시사점

- ■ 이상과 같은 법원 판례에 따라 많은 재산분할 청구권자들은 이혼시 상대방의 퇴직급여 금액이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재산분할을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990년 민법에서 재산분할제가 도입된 이후 이러한 이유로 이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되지 못한 퇴직급여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 불가는 이혼 후 주로 여성으로 대표되는 청구권자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부부 공동재산 중에서 퇴직급여 비중이 커 퇴직급여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는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4) 퇴직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로 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8조, 제15조).

25) 다만, 퇴직금의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금채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의 잔여재산에 대한 퇴직금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며, 임금채불보장제도를 통하여 3년간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음.

2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이 부담한 적립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가 운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질이 있음(법 제20조 관련).

4. 주요국 퇴직급여 재산분할 사례 및 특징



- 미국은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tirement Equity Act)을 제정하여 퇴직연금 관련법을 수정한 바 있음.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아직 퇴직하기 전일지라도 장래 받을 연금의 현재가치를 환산하여 받는 방법 또는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연금을 분할하여 받는 방법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고 있음.
 - 법원은 대체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하여 균등 분할을 명하고 있으며, 적격연금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조기에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음.²⁷⁾
- 일본은 퇴직금 분할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장래 급부되는 연금에 관해서 청산 대상으로 보는 것과 부양 대상으로 보는 판결이 상존함.²⁸⁾
 - 일본 판례에서는 향후 정년퇴직하여 퇴직금 수령까지 9년 남은 배우자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일정기간 이내에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퇴직금의 경우에는 이를 청산적 재산배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²⁹⁾
- 독일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경우 연금분할은 이혼 당시 급여산식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하고, 이 가운데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등하게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다만, 연금분할 의무자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업연금에 가입하게 될 경우 실제적인 분할은 향후 연금 지급개시 시점에 가서 이루어지게 됨.
 - 만약 연금분할 의무자가 중도에 사망하게 될 경우 상대방 청구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는 사망당시 가입하고 있던 연금제도에서 지게 됨.³⁰⁾

27) 황신정(2012),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누어 받나?」, 월간 생명보험협회.

28) 동경고등재판소는 “정년퇴직까지 7년이 남아있으므로 퇴직일시가 불확실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미래에 지급받을 퇴직금에서도 지급받을 개연성이 높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함(東京高判平10·3·13). 또한,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도 향후 정년퇴직까지 9년이 남은 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혼인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함(名古屋高判平成12年12月20日).

29) 김용원(2008), 「이혼시 부부재산분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30) 이정우(2003),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5.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향



- **공정한 재산분할에 의한 부부의 실질적 평등³¹⁾과 이혼여성의 자립기반 개선, 사회적 비용 경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퇴직급여의 재산분할제 도입이 필요함.**
- **첫째, 재산분할제 도입 이후 시대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극적인 재산분할제도로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1994년에 개인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이러한 법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미래에 재산권이 행사되는 연금상품 및 파생금융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추상적 법률로 인하여 이러한 무형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재산분할 분쟁 증가와 법률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퇴직급여 재산분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각각의 연금법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명시적인 재산분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재산분할은 근무연수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기여율을 적용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자에게 1/2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없고 공적연금과 퇴직급여 기능이 공존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 수급권 발생시점을 분할 지급시기로 하여 선택에 따라 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요구됨.
 - 분할지급의 주체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해당 연금공단이 연금분할 청구 접수 및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민간의 퇴직(연)금은 후불임금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특성을 반영하여 분할 지급시기를 미국과 독일처럼 이혼성립시 또는 퇴직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퇴직(연)금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부부 쌍방에게 안내와 기본적인 절차를 사전에 명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중요함.

31) 우리나라의 노인여성 빈곤율은 일본(24.7%)의 두 배에 달하는 47.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매일경제 2014. 3. 10).

- 다음으로 이혼성립 시점에 즉시 분할을 위해서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개념을 도입하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로 한정하여 퇴직(연)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요구됨.³²⁾
-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분할을 위해서는 현재 근퇴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연금 압류신청권³³⁾을 재산분할 시로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요구됨.
- 분할지급 주체는 기업에게 제3의 채무자로서 분할지급 권한을 부여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이 금융회사에게 지급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

■ 넷째,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DB)형 및 확정기여(DC)형의 특성에 따른 재산분할 산출방법이 필요함.

- DB형 분할은 법률에 따라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혼 성립시점을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로 상정하여 지급해야할 급여액(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에 대한 근속연수)에 대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
- DC형 분할은 가입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여 운용된 현재까지의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음.
- DB·DC형에서 연금으로 선택하는 경우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배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일시금 선택시 청구권자가 분할받은 일시금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32)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이 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임금채불보증기금에서 일정기간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잔여액에 대해서는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산분할 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3) 현재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4호)은 급여 및 퇴직금 등의 경우 채권자의 압류신청권(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허용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근퇴법(제7조 제1항에서는) 퇴직연금의 권리를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